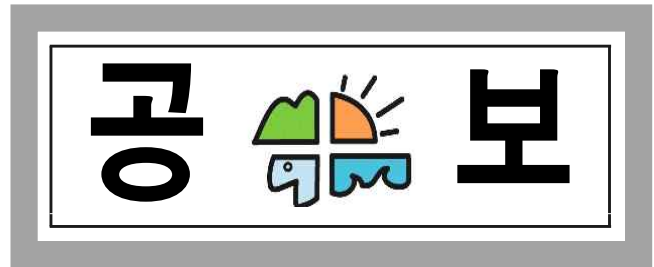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13호 2016년 9월 20일(화)

공 고

-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장사시설 설치 지역인 이목리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2조)
- 나.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3조 ~ 제4조)
- 다. 존속기한 (안 제5조)
- 라. 기금의 용도 (안 제6조)
- 마. 기금의 운용 관리, 계획 및 결산 (안 제7조 ~ 제8조)
-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제13조)
- 사. 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14조)
- 아. 지원기금의 회수 등 (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노인복지팀)
- 연락처 : 033-639-2044 (FAX 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33-6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속초시 이목로 194 일원에 장사(葬事)를 위해 조성한 시설(승화원, 추모의 집, 봉안묘 등)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있는 속초시 이목리 지역(노학동 32통)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속초시 이목리(노학동 32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장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출연금은 금5천만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 담당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3. 제14조제1항에 의한 기금지원사업 적정 여부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여성가족과장, 노학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1명

2. 세무사·회계사 등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명

3. 속초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속초시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속초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1. 기금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기금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의결 포함)
4. 정관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학동 이목리 마을회”로 한다.

③ 기금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가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기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기금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14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 지원을 통지 할 경우에는 기금지원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